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김 현 호* · 강 현**

〈요 약〉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민간경비원, 다중이용시설, 응급처치능력, 응급처치교육만족도

* 포츠머스 대학교 형사사법학 박사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목 차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 론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구의 도시화, 건물의 대형화·고층화, 도시 주택의 아파트화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다양한 사회 변화 구조 속에 민간경비산업 또한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2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비원들의 교육, 복지 및 처우개선 강화, 자격기준 강화로 민간경비원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용역경비업법 제정 당시 9개 밖에 되지 않았던 민간경비회사가 1980년대 중·후반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등의 대형 국제 행사를 계기로 민간경비산업이 급성장 하게 되었다(이세환, 2012). 2015년 기준 4,449개의 민간경비 회사가 있고 그 인원은 경찰관수(113,077명)를 훨씬 뛰어넘는 153,767명의 민간 경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다(사이버 경찰청).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보여 왔는데(CoEss, 2011), 이제는 민간경비가 Kakalik & Wildhorn(1971)가 언급한 Junior parnter(손아래 파트너) 개념을 넘어, 민간경비도 범죄예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구로서 경찰과 상호협력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 소비패턴이나 주거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민간경비의 주역할인 범죠평방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Wakefield, 2003).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마트와 같은 곳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 또한 개인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가구 형태에서 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많은 인원들이 밀집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인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간경비원들이 배치되고 있다. 배치된 민간경비원들은 시설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이용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길 안내, 민원해결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akefield, 2003).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다중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경비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은 리조트, 병원, 공연장과 같이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근무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간경비원은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환자치료에 있어서 최초 응급처치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차후 상태에 큰 차이가 있다(김보균, 박인성, 2013). 하지만,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천장 붕괴 사건이나, 동년 5월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10월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건 그리고 2016년 부산 모 대학교 축제 추락사고 까지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사고에서는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근 응급처치교육은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교육중 하나로서 많은 사회기관에서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 대학의 교양 과목 및 체육학과와 관련된 학과 등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환자는 연간 3만 여명 이상으로 이 수치는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5천여 명 보다 많은 수치이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받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율이 1.3배나 증가하였고, 뇌 회복률 또한 1.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로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또한 선진국의 9.6%로 보다 절반 이상 낮은 4.4%이다(119 전남소방본부).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2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이나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2·3). 2015년에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부)지정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2016년에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으로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에서,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의무화 되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응급처치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처럼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또한 강화·의무화 될 필요성이 있다. 민간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근무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 신입교육 스케줄 표에 따르면 응급처치 관련된 과목은 총 28시간의 교육시간 중 화재대처법 및 응급처치법 교육으로 2시간만¹⁾ 배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각자 근무지의 환경에 맞게 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지만, 차후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이나 대처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조금이나마 관련된 연구를 찾아본다면 경호전공 대학생의 응급처치 인식 수준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연구(Kang, Choi, 2013)가 유일하다. 이 연구 또한 경호분야의 응급처치 실태를 조사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현재 민간경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첫 연구로서 그 학술적 가치나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1) 본 연구자도 A협회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교육 기초과정(12시간) 및 전문과 과정(30시간)을 이수하였지만, 2시간의 교육만으로는 실제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8부를 제외한 182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아래 < 표 1> 과 같이 나타났다.

<표.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

일반적 특성	구성	빈도(명)	빈도(%)	누락빈도(%)
연령	60대 미만	17	9.34	9.37
	60대 이상 70대 미만	111	60.99	70.33
	70대 이상	54	29.67	100.00
근무연수	2년 미만	60	32.97	32.97
	2년 이상 4년 미만	58	31.87	64.84
	4년 이상	64	35.16	100.00

위의 <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대 이상 70대 미만은 111명으로 60.9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 54명 29.63%, 60대 미만 17명 9.34%의 순서로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4년 이상 64명 35.16%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년 미만 60명 32.97%, 2년 이상 4년 미만 58명 31.87%의 순서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계결과를 요약하면, 60대 이상 70대 미만의 연령대이며, 4년 이상 근무한 다중이용

시설 민간경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 반영 다소 적은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용되어진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응급처치관련 강사활동 또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 3인과 함께 내용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구성으로는 아래의 < 표 2> 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구성개념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연령	귀하의 연령	4
	근무연수	귀하의 근무연수	
	연간 직무교육	귀하의 연간 직무교육 횟수	
	응급처치교육	귀하의 응급처치교육 횟수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일반적 만족 환경적 만족	응급처치 교육 내용에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6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전문적인 수준이었습니까?	
		응급처치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한 실습기자재가 활용되었습니까?	
응급처치능력	단일개념	실습과 같은 현장감 있는 교육방법이 충분히 활용되었습니까?	9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방법이 적절히 활용되었습니까?	
		1.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3.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4. 체온손상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5.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6. 근육손상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7. 골절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8. 기도폐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9. 근무지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을 쉬지 않을 때, CPR을 할 수 있다	
10.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 일반적 특성

위의 < 표 2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 특성은 연령과 근무연수 그리고 연간 직무교육 횟수와 응급처치교육 횟수 4문항을 두었다.

2) 응급처치능력

그 외 설문지의 구성은 강경순, 전현민 외(2013)의 응급처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구조와 응급처치 교재와 정현민 외(2013)가 작성하고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응급처치와 안전관리 교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으며, 측정도구의 Scale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응급처치능력은 1점(매우 자신 없다)에서 5점(매우 자신있다)로 하였다.

3) 응급처치교육만족도

응급처치교육만족도는 김뢰호 외(2014)의 연구에서 안전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조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응급처치교육만족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자신 있다)로 구성되었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측정문항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급 처치교육만족도는 일반적 만족도와 환경적 만족도 2개의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응급처치능력은 1개의 개념이 고유 값 1이상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일반적 만족도는 적재량의 문제가 있는 3번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삭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적 만족도(.844~ .876)와 일반적 만족도(.833~ .867)는 모두 .5이상의 값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검증결과 응급처치교육 만족도(KMO: .824, χ^2 : 563.562, df: 10 p: .000)는 이상적인 표집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2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응급처치능력(.586~ .848)도 .5이상의 적재된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검증결과도 현장 응급처치능력(KMO: .925, χ^2 : 1056.012, df: 36 p: .000)이 이상적인 표집크기를 갖고 있었으며, 62.5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의 내적일치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을 통하여 내적일치도 여부를 판단하였다.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로는 환경적 만족도(.904), 일반적 만족도(.776) 모두 .7이상의 값을 갖고 있으며, 응급처치교육 만족도(.889)도 기준 이상의 값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응급처치능력(.924)도 기준이상의 값을 상회하고 있기에 일반적 만족도와 환경적 만족도 그리고 현장응급처치능력의 내적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분석방법

수도권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82부를 연구에서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Stata se/14.0 ver 을 사용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연간 직무교육 횟수와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 불완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가설검증을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간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는 < 표 3> 과 같이 나타났다.

다음 < 표 3> 에 나타난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연간 직무교육 횟수는 4회 이상 교육을 받는 경비원이 106명(58.24%)으로 가장 많았으며, 3회 34명(18.68%), 2회 22명(12.09%), 2회 미만 20명(10.99%)의 순서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 횟수는 4회 이상이 75명(4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회 미

만 45명(24.73%), 2회 이상 3회 미만 37명(20.33%), 3회 미만 25명(13.7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연간 직무교육 횟수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분포

구분	구성	빈도(명)	빈도(%)	누락빈도(%)
연간 직무교육 횟수	2회 미만	20	10.99	10.99
	2회	22	12.09	23.08
	3회	34	18.68	41.76
	4회 이상	106	58.24	100.00
응급처치교육 횟수	2회 미만	45	24.73	24.73
	2회	37	20.33	45.05
	3회	25	13.74	58.79
	4회 이상	75	41.21	100.00

연간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직무교육은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58.24%로 높았으나, 이에 비하여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의 횟수는 3회 미만이 58.79%로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횟수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간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변수의 차이

1)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차이

연간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는 < 표 4> 와 같이 나타났다. 다음 <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차이는 일반적 만족도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회 미만 또는 3회의 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보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의 일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차이

변인	구성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일반적 만족도	2회 미만(a)	20	3.025	.678	9.39	.000	d >a d >c
	2회(b)	22	3.432	.955			
	3회(c)	34	3.309	.749			
	4회 이상(d)	106	3.811	.671			
환경적 만족도	2회 미만(a)	20	3.017	.806	-	-	-
	2회(b)	22	3.273	.995			
	3회(c)	34	3.255	.857			
	4회 이상(d)	106	3.5	.821			

*p<.05, **p<.01, ***p<.001

2)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능력의 차이

연간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는 < 표 5> 와 같이 나타났다.

다음 < 표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직무교육을 2회 미만 받는 민간경비원보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이 응급처치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능력의 차이

변인	구성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응급처치능력	2회 미만(a)	20	2.589	.882	3.96	.009	d>a
	2회(b)	22	3.131	.821			
	3회(c)	34	3.078	.964			
	4회 이상(d)	106	3.331	.912			

*p<.05, **p<.01, ***p<.001

3)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차이

연간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는 < 표 6> 과 같이 나타났다. 다음 <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에는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일반적 만족도는 2회 미만의 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보다 2회, 3회, 4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민간경비원의 일반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만족도에서도 2회 미만의 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보다 2회 3회 4회 이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민간경비원이 환경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차이

변인	구성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일반적 만족도	2회 미만(a)	45	2.9	.679	24.25	.000	b)a c)a d)a
	2회(b)	37	3.635	.796			
	3회(c)	25	3.64	.55			
	4회 이상(d)	75	3.953	.599			
환경적 만족도	2회 미만(a)	45	2.815	.757	10.26	.000	b)a c)a d)a
	2회(b)	37	3.432	.765			
	3회(c)	25	3.533	.811			
	4회 이상(d)	75	3.627	.833			

* $p < .05$, ** $p < .01$, *** $p < .001$

4)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현장 응급처치능력의 차이

연간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는 < 표 7> 과 같이 나타났다. 다음 < 표 7>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은 2회 미만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민간경비원보다 4회 이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응급처치교육 횟수에 따른 응급처치능력의 차이

변인	구성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응급처치능력	2회 미만(a)	45	2,689	.845	6.92	.000	d)a
	3회 미만(b)	37	3,198	.810			
	4회 미만(c)	25	3,213	.858			
	4회 이상(d)	75	3,450	.958			

*p<.05, **p<.01, ***p<.001

3.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미치는 영향

응급처치교육 만족도가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 표 8 > 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응급처치교육만족도가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td. Err	t	β
상수	1,815	.324	5,60	
일반적 만족도	.246	.112	2,19	.205
환경적 만족도	.142	.101	1,40	.131
R ² =.0939		R _{adj} =.0838		F=9,28***

*p<.05, **p<.01, ***p<.001

위의 < 표 8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급처치교육 만족도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에 일반적 만족도(β :0.205,*)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도 8.38%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도 1.73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는 응급처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최근 유동인구가 많거나, 군중이 밀집된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원의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간경비원은 최초반응자 혹은 시설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이나 대처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첫 연구로서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2017년 3월에서 4월까지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실태 및 응급처치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의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활동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연령의 민간경비원인 경우,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응급처치교육만족도에는 연간 직무교육 횟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교육 횟수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응급처치교육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처치교육만족도는 응급처치교육 횟수를 적게 이수한 민간경비원이 낮게 나타났으며,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의 만족도와 응급처치능력을 위해서는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이 자주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교육 만족도의 일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횟수만큼이나, 질적 수준을 높여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민간경비원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응급처치교육 횟수를 늘려 민간경비원의 높은 수준의 응급처치교육 만족도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관리가 필요하며, 교육 횟수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원이 이수해야하는 응급처치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제시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배치된 민간경비원에게 요구되는 응급처치능력을 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응급구조능력이 있는 교육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민간경비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응급상황 시 최초접촉자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에 이를 확인하고,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능력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수도권지역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측정도구가 폐쇄형 설문지로 구성되어있기에 연구대상자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그 가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순, 정현민 외(2012).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구조와 응급처치. 발행: 범문에듀케이션 김뢰호, 권용수, 김혜영(2014). 재난안전관리분야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 국인사행정학회보. 제.13권. 제.3호.:385-401
- 김보균, 박인성 (2013). 대학생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지식 및 요구. 한국 엔터테인먼트학회, 7(3), 103-111
- 보건복지부 (2015).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
- 이경호, 윤영철, 안성훈, 김원울, 김경환, 김홍용, 성백문, 조영식, 전형대, 구본(1998). 응급의 료 정보전달매체로서의 구급활동일지의 유용성. 대한응급의 학회지, 2, 220-230.
- 이세환 (2012). 민간경비 발전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에 관한 연구-일본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67-194.
- 정현민, 장미영, 박상욱, 강경순, 이무연(2013). 안전보건 평생학습 응급처치와 안전관리.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 Kyoung Soo, Kang, Pan AM, Choi (2013). 경호전공 대학생의 응급처치 인식 수준 및 교 필요성에 관한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9(2), 220-230.

2. 국외문헌

- Kakalik, J. and Wildhorn, S. (1971). 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Volume 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kefield, A. (2003). Selling security – the private policing of public space, Cullompton, UK: Willan.

3. 기타

- 법제처 www.moleg.go.kr (검색일자. 2017. 4. 27)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검색일자. 2017. 4. 27).
- 119 전남소방본부. <https://www.jnsobang.go.kr/?c=3/23&uid=6548>. (검색일자. 2017. 4. 29).
- CoEss. <http://www.coess.org/>. (검색일자. 2017. 4. 27).

【Abstract】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Actual Condition of First-Aid Education

Kim, Hyun-Ho · Kang, Hye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in 1976,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rapidly grown i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In the circumstance, various roles of private security guards have been demanded. A private security guard as the first contactor of the users of multi-use facilities should first find an accident field situation and make a response when an accident occurs, and should give first aid as most as possible until emergency medical workers arrive. However, there is a lack of first-aid education for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facility us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find how many times private security guards have job and first-aid education, and analyze how the education count influences their first-aid ability; secondly to analyze how private security guards' satisfaction with first-aid education influences their first-aid abilit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first-aid 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orking in the metropolitan areas. For data analysis, Stata se/ 14.0ver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n validity and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and a Cronbach's a value was drawn. To find the actual conditions of first-aid education, frequency analysis, inter-group difference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re were not enough times of job education and first-aid educa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first-aid education and first-aid ability wer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job and first-aid education counts. Also, their satisfaction with first-aid education partially influenced their first-aid ability.

Keywords: Private security Officer, Multi-use facility, First aid ability, First-aid education satisfaction